





모시는 글



최근 발생한 통영사건은 아직도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아동이 우리 사회에 남아 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여성과 아동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 2012년 아동대상 성폭력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성폭력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라는 주제로 제 77차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합니다. 현재의 아동성폭력방지대책과 7월 26일 발표된 긴급대책 내용의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을 점검해보고, 나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방지대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기적인 차원에서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이 보다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과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2.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최 금 숙



프로그램



13:30~14:00	등 록	
14:00~14:10	개 회 식	사 회 : 이택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 인사말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14:10~15:10		사 회 :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정책센터장)
	발표 1	최근 아동성폭력 방지 긴급대책의 내용과 향후 개선방안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성폭력 피해자 권리 관점에서 본 성폭력 방지 대책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15:10~15:30	휴 식	
15:30~16:00	지 정 토 론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서기관)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16:00~16:30	종 합 토 론	



발표 1

최근 아동성폭력 방지 긴급대책의 내용과 향후 개선방안1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토론문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서기관)	45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47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53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57

최근 아동성폭력 방지 긴급대책의 내용과 향후 개선방안

장 미 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아동성폭력 관련사건 대중매체 보도1)

- 2001년 이후 국가청소년위원회 성범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성범죄 발생시간은 주로 오후 3-4시에 집중되고 있고, 전체 성범죄의 74%는 학교 반경 2k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음(시사저널 2008.3.31.).
- 2010년 부산 사상구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재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전체 1,170 여 가구 중 500여 가구가 이사한 상태이었고, 철거가 진행 중이어서 빈집이 많았음. 이 러한 지역의 공간적 특성이 범죄의 발생과 은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한겨레 2010.3.12.).
- 나영이가 사고를 당한 골목은 학교를 가는 길에 꼭 지나쳐야 하는 곳으로, 학교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골목 안에서 사고를 당하면 누구도 쉽게 도와주기 어려운 구 조였음(동아일보 2010.3.15.).
- 2008년 대구 지역 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연루되었던 성폭력 사건의 배경에는 빈곤으로 인한 자녀의 방임이 자리 잡고 있음. 부모의 방임은 자녀에 대한 의도적 무관심 보다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정에서 자녀를 홀로 두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다수임.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부모의 퇴근시간 전까지 자녀들은 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대구 지역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동들은 부모가 없는 집에서 여러 명의 친구들이 단체로 음란동영상을 접하였고, 호기심으로 동영상에서 본 것을 실행함으로써 성폭력 가해와 피해가 발생한 것임(한겨레 21 2008.5.9).

2. 아동성폭력 범죄의 특징

1)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

○ 범죄자 분석에 근거한 자료에 의하면, 단순강간에서 면식자의 범행 비율은 50%, 유아성 폭력 30%, 연쇄강간범 비면식자 비율은 84%임.²) 아동성추행 범죄자 자료를 근거로 하는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비면식 관계인 경우는 62%로 나타남.³)

¹⁾ 본 원고의 1장과 2장은 2010년도에 발간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방안(II): 여아가 안전한 지역사회 모델개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²⁾ 홍성열(2008), 『홍성열 박사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이야기』, 서울: 수사연구지.

^{3) 2006}년 1월부터 2009년 10월 사이에 입력된 성범죄 항목과 피해자 연령 13세 미만으로 추출된 79건이 분석대상이며,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일반적 특성 검토,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 따른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정연대(2009), "아동대상 성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범죄 행동 특성 분석", 『제3회 범죄행동분석 학술세미나: 성범죄 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 그러나 일반조사 자료에서는 공식범죄 자료와 다른 경향을 보여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 자와 아는 사람인 경우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4)
- 공식범죄 자료는 신고된 것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친족성폭력,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신고율은 낮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범죄 자료를 이용한 연구자도 신고되지 않는 것을 고려할 경우 안면이 있는 사람에 의한 가해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함.5)
-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따라 성폭력의 유형도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아동대상 성범죄의 경우 아는 사이에서는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6) 비면식의 가해자가 길이나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는 71%를 차지하고 있음.7)

2) 가해자 특성

- 일반적으로 성범죄자의 정서적 특성으로 성적인 충동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러한 면 자체보다는 분노, 좌절, 우울, 외로움, 거부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성폭력으로 이르게 되는 경향을 보임.8)
-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성학대나 여타 폭력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고, 가족 관계에도 문제를 보임. 이들은 심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경향을 보이며,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 정도가 낮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정서적 특성을 바탕으로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왜곡된 인식이 성범죄에 이르게 함.9)
- 연쇄성범죄자 분석 연구에서도 범죄자의 정서적 특성으로 공감능력 약함, 대인관계 약함, 인간관계 고립, 폐쇄적 경향,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 약함이 지적되고 있음.10) 성범

⁴⁾ 이미정 외(200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⁵⁾ 정연대(2009), "아동대상 성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범죄 행동 특성 분석", 『제3회 범죄행 동분석 학술세미나: 성범죄 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⁶⁾ 정연대(2009), "아동대상 성범죄의 가해자-피해자 관계에 따른 범죄 행동 특성 분석", 『제3회 범죄행 동분석 학술세미나: 성범죄 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⁷⁾ 성폭력 가해자는 가족구성원을 포함하여 잘 아는 사람에서부터 낯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불쾌한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을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등하교 길에 낯선 어른을 경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나영이의 아버지는 "어른들에게 공손하라고 가르친 게 내 최대 실수였다"고 말하며, 딸의 피해가 낯선 어른을 경계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다며 안타까워했다(동아일보 2010.3.15).

⁸⁾ 고선영 외(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제10권 특집호, pp. 117-146.

⁹⁾ 고선영 외(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문제심리학회』제10권 특 집호, pp. 117-146.

¹⁰⁾ 공은경(2009), "연쇄성범죄자 프로파일링: 범죄현장 분석 및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제3회 범죄행동 분석 학술세미나: 성범죄 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공은경의 연구는 46 명의 연쇄성범죄자를 분석한 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단순히 성을 목적으로 한 연쇄성범죄이기보다는

죄자는 강제적 성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주장하고 싶어하고, 이를 통해 남성성을 과시하려는 성향을 보임.¹¹⁾

○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연령은 대부분은 30대 이하인데, 20대 비율이 감소하고 40대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12) 2008년 청소년 성범죄 피해의 경우는 강간 미수나심한 추행의 가해자는 10대와 20대에 주로 분포되어 있지만, 가벼운 추행은 30대-40대에 분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13)

3) 아동성폭력 피해발생의 공간적 특성

- 성폭력 가해자는 성폭력 피해아동의 거주 지역 인근에서 주로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됨. 즉, 아동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며, 가해자와 면식 혹은 비면식일 수 있고, 피해자의 거주지 3km 반경 이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14)
- 아동대상 성범죄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등·하교 안전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경우 등교 시 보호자가 학교까지 동행하고, 하교 시 학교가 보호자에게 아동을 인계하는 방식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음.15)
- 2008년 청소년 대상 조사에서도 청소년 성범죄 피해, 강간 미수가 발생한 곳으로 학교주변의 길거리, 친구나 친척의 집, 유흥·오락 장소 등 이었고, 심한 추행의 경우는 가해자의 집, 유흥·오락장소, 공중화장실, 그리고 가벼운 추행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16)
- 대중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일련의 아동성폭력 사건을 검토해보면 아동의 생활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계층적 요인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사고의 위험이 모든 사회집단과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 환

강도 절도 목적에서 동반 발생한 기회적 강간이 관찰되고 있다.

¹¹⁾ 김해선 외(2009), "연쇄 강간범 지리적 프로파일링", 『제3회 범죄행동분석 학술세미나: 성범죄 프로파일링』 2009년 11월 20일,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¹²⁾ 홍성열(2008), 『홍성열 박사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이야기』, 서울: 수사연구지.

¹³⁾ 홍영오(2008), 『2008년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¹⁴⁾ 정연대(2009), "아동 대상 성범죄자의 가해자-피해자 관계 연구" 나영이 아버지는 가해자 조두순이 자신의 가족이 살고 있는 동네 정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 런 가운데 피해 대상을 노렸다고 주장함.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행이나 살인은 교통사고처럼 우 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가 아님. 우리 집에서 400-500m 떨어진 상가에서 9개월 간 경비일을 보았고 집도 근처에 있었음. 동네를 잘 알아 먹잇감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함(동아 일보 2010.3.15)."

¹⁵⁾ 홍성열(2009), "성범죄의 근본적 이해(유형과 대처방안)"

¹⁶⁾ 홍영호(2008), "성범죄의 근본적 이해(유형과 대처방안)"

경에 집중되어 있음¹⁷⁾ 청소년 대상으로 분석된 한 연구결과에서도 구역·지역 특성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안전도에 차이가 있으며, 특히 농어촌지역과 도시 내 상업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폭력에 더 취약한 환경인 것으로 보고됨.¹⁸⁾

○ 또한 최근 아동대상 성폭력 사건을 보면 피해 아동이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지역사회 공간과 범죄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동주택 건설 및 도시설계와 개발 시 부터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고려될 필요성이 있음.19)

3. 정부의 아동성폭력 근절대책

정부는 2012년 7월 2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최근 발생한 아동·여성 성폭력 살인 사건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확정함. 정부는 다음의 주요 과제들을 추진 할 예정임.20)

1)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 '성범죄자 알림e' 접속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실명인증절차를 폐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 한 모바일 서비스제공 추진
- 성인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권자에 미성년자 추가
- 신상정보 공개 내용 구체화
 - 주소지의 경우 동(洞)단위까지만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 추진
-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공유
 -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제공하여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대상 소급 적용 검토
-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일원화 문제는 우선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이용 절차 및 시스

¹⁷⁾ 송현종(2006), "아동안전사고의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16 호, pp.89~98.

¹⁸⁾ 김영한·최은실·김윤정(2009),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¹⁹⁾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는 물리적 환경과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기법이다. 선진국에서는 학교 및 교통체계와 같은 도시하부체계 뿐만 아니라 도시특별지구 및 주거지역을 위해 안전하게 하기 위한 예방 전략을 수립한다(김영한 외, 2009).

²⁰⁾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검색일자: 2012년 7월 26일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736787

템을 개선하여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법적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형량 강화 및 단속 강화
- SOS 국민안심서비스 사업 확대 추진
 -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원터치 SOS와 112앱은 서울·경기·강원 등 3개 시·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자도 미성년자에서 전체여성으로 확대
- 성폭력 사범 치료 강화
 - 성폭력치료재활센터 및 강화된 치료프로그램을 활용한 정신성적 장애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치료·관리 체제 확립
 - 치료감호기간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

2) 성폭력 우범자 밀착 관리 및 처벌 강화

- 전체 성폭력 우범자(2만 219명)의 재범위험성에 대해 철저히 첩보를 수집하는 등 우범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등 밀착 관리 강화
- 범죄전력, 정신적 성향, 재범위험성 등 양형자료 충실제출 및 구형기준 엄격 적용으로 중형 선고 유도로 성폭력사범 철저 격리
- 우범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지속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보강
- 지자체와 경찰 공동, 둘레길 등 한적한 관광지 대상으로 범죄 취약 지역 합동점검 실시

3) 취약아동 돌봄 기능 강화

- 취약계층 아동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확대
- 취약지역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유도
- 지역사회 내 연계체계 구축으로 수요 발굴 및 필요서비스 제공
 - 드림스타트센터(전국 181개소 시군구 설치 운영 중)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관리 대 상 취약계층 아동의 수요 발굴 및 돌봄기관 연계 등 사례관리 실시
- 취약 학생에 대한 방과 후 돌봄 기능 강화
 - 초등돌봄교실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우선 지원
-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토요 돌봄교실 및 방학중 돌봄교실 운영
- 취약 아동 등 등하굣길 동행서비스 제공 및 아동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나홀로 아동 지 킦이' 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차원에서 자원봉사단체 및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연계한 특화된 나홀로 아동 지킴이 서비스 제공

○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올 연 말까지 CCTV(2800개소 4927개 / 290억원), 2013년 이후 11285개소 18887개(1471억원) 추 가 설치

4) 피해자 지원 기능 확충·강화 추진

- 성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 성폭력피해 아동 전문 치료 기관 전국 확대 (미설치 지역 3곳 (대전, 충남, 제주) 신규 설치 추진)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내실화
 -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아동·청소년 상담·치료 전문가 확충
- 성폭력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 확대

4. 아동성폭력 근절대책의 보완사항

1) 통영사건을 통해서 본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문제점

- (1) 아동돌보미 서비스
- 시간제 또는 종일제로 '아이돌보미'가 양육자 대신 아이를 보살펴주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 2009년 전국으로 확대
- 2012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은 435억원. 지난 5월까지 3만1218가구가 이 서비스를 받음.
- 지원자가 몰릴 때 ① 저소득 취업 한부모 가정, ② 취업 한부모 가정, ③ 맞벌이 가정, ④ 다자녀·장애아·장애부모 가정 순으로 아이돌보미를 배정
-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연간 480시간으로 제한된다. 매일 2시간씩 주 6회 야간 돌봄서비스를 받아도 40주에 그침.
- (2) 통영의 한양사건의 경우 한부모 가정의 아이인 한양은 지원 1순위에 해당됨에 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함.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 필요

2) 근절대책의 보완사항

(1)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

- 나홀로아동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 필요(돌봄의 공백상태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기존의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와 대상 확대(예산증액) 필요
- (2) 아동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과 인권의 문제에 대한 교육강화(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방향 강구)
- (3) 현재 사전교육이나 훈련 없이 배치되고 있는 아동안전지킴이, 학교배움터 지킴이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실시
- (4) 지역사회차원의 대응책 필요
- 최근의 사건들은 폭력피해 아동이 지역사회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행정구역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연대의 공간적 구성범위는 향후의 주요과제로 남음. 지역연대가 관할해야하는 공간적 범위가 지나치게 젊을 경우 피해자의 접근성, 거주자의 친근성이 떨어져 안전의 공백지대로 남을 수 있음.
-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이들의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개별적 개입 수준을 넘어 지역연대를 구성한 통합적이고 다양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함께 모여 여성과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증진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지역사회 거버너스를 시행하고 있음²¹). 이는 지역사회 연대로서 해당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개입과 통제, 사회적 규범과 네트워크 및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²²), 안전증진을 위한 지역구성원 간 협조와 지역사회의 능력강화 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다는 지역사회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그 효과성과 효율성(collective efficacy: Sampson, 1997)²³⁾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함.

²¹⁾ 오해섭·이민희·김영호(2007), 『뉴거버넌스를 통한 청소년행정체계 운영모형 정립』,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²²⁾ Putnam.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²³⁾ Sampson. R., S. Raudenbush & F. Earls.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 918-24.

○ 다시 말해서 여성과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를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져 지역의 유대(social cohesion)를 강 화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역 공동체 차원의 감시가 이루어지는 지역일수록²⁴) 여성과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예방하고, 그들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음을 의미함(Daro. D. & K. A. Dodge. 2009).

5. 아동 성폭력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모델²⁵⁾

수준	특성	폭력유발 요인	관련 정책
개인 (individual)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성적 특성	·낮은 자존감 ·충동억제능력 부족 ·스트레스 대처능력 부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개인 상담프로그램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개인간 관계 (relation)	가족, 친구, 동년배 집단과의 관계 결연	·또래 집단과의 관계성 약화 ·가구소득의 급속한 소득 감소 ·가족구성원의 건강 문제 ·부모의 방치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역 (community)	사회자본의 부족	·사회적 연결망 부재 ·이웃간 관계 부재	·지역연대 ·NGO와 지자체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학교내 폭력방지
사회 (society)	사회통합의 문제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적 풍토	·아동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의식개선 강화 ·빈곤 감소 ·소득격차 감소

○ 여성과 안동을 위한 폭력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지역 사회전체의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며 지역연대는 이러한 지역사회 대상 안전정책으로서 의미가 있음.

²⁴⁾ Daro. D. & K. A. Dodge. 2009. "Creation Community Responsibility for child Protection: Possibilities and Challenges." Journal 19(2): 67-93.

²⁵⁾ World Report on Violence and Health

성폭력 피해자 권리 관점에서 본 성폭력 방지 대책*

이 미 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 이 장은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제5장을 기반으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1. 시작하며

지난 20여년 동안 반(反)성폭력 법·정책의 개선으로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권리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0% 미만으로 추산되는 성폭력 신고율1)은 광범위한 실제 피해규모와 현행법의 낮은 실효성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의 이면에는 주변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보다는 '혹시 유발하지 않았나'하는 의심과 비난의 사회적 통념에 맞서야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현실이 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과거 성력 등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원치 않는 합의강요로 인한 고통을 겪기도한다. 이는 기존의 법규정, 이행과정,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피해자들의 대응방식과 지원체계 시스템 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제대로 권리보장을 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victim)라는 용어가 갖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 대한 전환을 제안한다. 2000년 들어 여성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피해자를 생존자(survivor)로 바꿔 부르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수동성, 약함, 취약성을 내포하며 여성의 끈질긴 저항과 힘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유엔, 2008[2006]: 24). 수많은 생존자들은 피해로 인해 고통과 절망, 분노 등을 겪지만 그 내면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과 용기, 지혜를 갖고 있다.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란 용어는 이러한 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생존자'라는 새 이름 짓기(naming)를 한 것이다. 나아가 생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말조차 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자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 변화의 주체이며, 피해생존자로서 수사·재판·진료·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운동차원서의 용어선택이기도 하다.

한편, 생존자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부터 살아난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용하는데 다소 생경함이 있고, 또한 성폭력 피해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경우는 생존자로 불리울 수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리고 '생존자'는 여성이 경험한 폭력으로부터의 피해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유엔, 2008[2006]: 24). 또한 생존자의 정체성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전히 피

¹⁾ 여성가족부의 『2010년 전국 성폭력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체 515명의 성폭력 피해자 중 15명만이 경찰에 고소를 하여 신고율이 2.9%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의 유형 중 강간 및 강간미수의 신고율은 12.3%로 나타나고 있어 2007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폭력실태조사 결과인 7.1%, 1990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인 1.85%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08: 280; 2010: 18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90).

해의 경험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낙인화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너무 억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Draucket, 1992; Herman, 2007;, Grossman, Cook, Kepkep, & Koenen, 1999; 김지혜, 2011: 134에서 재인용).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나 생존자가 아닌 '경험자'로 개념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변혜정, 2004; 김지혜, 2011).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생존자나 경험자로 다르게 명명하는 것은 기존의 '피해자'라는 용어가 가졌던 의미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다. 형사사법절차에서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생존자들의 존재와 경험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갈 때, '법적 합리성'도 자연스럽게 변화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용어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변화되어야 할 성폭력 피해자를 보는 관점 및 법적 지위

가. 배려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피해자 지위 확보

성폭력 피해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선택했을 때 주어지는 2가지 특징적인 지위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해자가 갖는 형사사법체계에서의 이차적인 지위와성폭력 피해자로서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서의 위치가 그것이다. 이와 같은 구조는 피해자들의 형사절차 참여권, 정보권,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실제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피해자 지위의 변화가 없이는 피해자 권리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다음 두가지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형사사법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2차적인 지위가 변화되어야 한다. 근대 형사법체계가 확립되어가면서 범죄에 대해 사적인 보복과 징벌이 엄격히 금지되고, 국가가 독점적으로 형사소추권한을 갖게 된 이후 피해자는 보이지 않고 소외된 존재였다. 국가형벌권이 강화되면서 주된 관심은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침해 유무에 집중되었고(이재상·이호중, 1992),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경험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또 회복을 위해서무엇이 필요한지 등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단지 고소인,참고인, 증인의 위치에서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절차의 객체이자 증거방법으로 치부되어온것이다. 즉, 피해자는 증거의 대상이거나 재판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전수영, 2009: 27)존재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사사법절차를 보면, 범죄로부터 국민인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국가가 해당 사건을 판단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가 아닌 권리보장의 차원에서 법·제도의 실행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 피해자는 통상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또한 관련 법들 명칭에 서도 「성폭력 방지 및 <u>피해자 보호</u> 등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의 <u>성보호</u>에 관한 법률」,「범죄<u>피해자보호</u>기금법」,「범죄<u>피해자 보호</u> 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강조, 연구자) 등 피해자 권리를 다루는 법과 규정의 제목들이 하나같이 '피해자 보호'로 표기되어 있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주요한 권리의 한 부분이지만, 피해자의 포괄적이고 주체적인 위치 및 입장을 담기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시혜적인 배려의 의미가 담긴 말이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다양한 권리를 의미하지 못한다. 특히 어린이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온 국민이 공분하며 주요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호중(2008: 68-69)은 피해자 권리규정에 피해자의 권한강화 내지 피해자의 주체화라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무'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법적인 피해자 권리규정들이 피해자에게는 신청의 권리만 주어졌을 뿐, 실제적 허가 권한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니는 신청권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2차 피해를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은 전적으로 허가의 권한을 지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좌우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 지위확보가 요구된다.

나. '피해자화'의 탈피와 피해의 맥락에 대한 새로운 이해

성폭력 피해자는 우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미지화된 무력하고 슬픈 존재, 나아가 평생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일단,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언어화하여 이야기하고지원을 요청하고, 사법기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분노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적극적이고주체적인 피해자이다. 그럼에도 성폭력 관련 보도를 보면, '평생상처',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 '영혼의 살인'등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고정시키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이러한 현상은 피해자가 그 피해로 인하여 완전히 무기력하고 자신의경험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누군가 그 피해의 경험을 대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피해자화의 정치'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이후 자아존중감의 회복과 피해 극복을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실은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획일화된 피해자 상(像)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자화'는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벗어난 피해자들을 '진짜 피해자'로 보지 않고 화간을 의심하고, 꽃뱀으로 모는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 담사례를 통해 보면, 피해자가 좋은 대학에 다녀도, 피해 이후 직장에 잘 다녀도, 울거나 흥 분하지 않고 피해사실을 조용조용 이야기해도, 증거를 잘 수집해 와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문제에 직면하는 방식, 성폭력에 대한 이해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 수용되어야한다.

또한 피해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70%는 아는 사람이고, 가족이나 친밀하고 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은 실제 상담통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판단기준에서 요구하는 최협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가, 피해자는 어떻게 얼마나 저항했는가 등의 입증요구는 전혀모르는 사람에게 우발적으로 입은 피해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을 입증해내야 강간으로 인정하는 현재의 판단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건의 발생양태와 이후 반응이 다르다는점이 강간의 판단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노조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조직보위론 속에서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한다. 동시에 '자본이나 정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볼 동지인데'라는 통념으로 인해 사건들이 가려지거나 묻혀지는 가해자 중심, 혹은 가해자를 둘러싼 조직원들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이를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계속 볼 동지이기 때문에' 더 분명히 처리하고 가야할 일이 되는 것이다(조지영, 2011: 111). 즉, 누구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고, 때로는 관점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듯이, 법적 판단기준에서도 피해자의 시각과 경험이 반영된다면 2차 피해는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변혜정(2008: 139-140)은 성별화된 역사 안에서 피해자 관점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언동이 '피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상상해야 하고, 둘째,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적 관계 안에서 성적 자유를 평등하게 성취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받아들여야 하며, 셋째, 법의 판단기준 변화를 촉구하는 피해자 관점은 피해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대로 결국 형사사법절차의 담당자나 주변인들의 태도에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었을 때에 피해자의 경험이 반영된 관점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의 개선

가. 친고죄 폐지와 최협의설의 폐기

대부분의 성폭력이 친고죄 규정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소추권이 철회될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피의자(피고인)들이 합의를 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

원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고 있다. 친고죄 폐지는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시에도 여성단체에서 강력한 주장을 했었다. 그럼에도 남성 위주의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이 주로 피해자가 여성인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야한다'며 친고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2007년, 2011년 연속해서 우리나라에 친고죄 폐지를 권고했다.2)

실제 우리사회에서도 성폭력의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 연령 및 범죄 유형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시 특수강도강간 등, 13세 미만과 장애인 성폭력, 친족성폭력 등에 한해서만 비친고죄였다. 1998년 신설된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도 비친고죄이다. 2006년에는 피구금자 추행죄와 장애인보호시설종사자의 간음, 추행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였다. 같은 해에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친고죄 형태에서 고소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가, 2008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을 바꾸었다. 이어서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3가지의 반의사불벌죄3) 항목만 제외하고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친고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치권과 정부에서 자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친고죄의 변화과정을 보면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지향점을 찾아가기보다는 사회적인 충격과 공분을 일으키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 후에 여론 무마성 법개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친고 죄 관련 법 규정은 일선의 수사담당자들마저 고소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지는 2차 피해도 일어나기도 한다.

한인섭(2006: 102)은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론을 펴면서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는

²⁾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제39차 회의(2007년)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최종권고 중 성폭력에 대해서는 "17. 위원회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환영하는 한편, 배우자 강간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함. 위원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에만 기소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우려함. 또한 위원회는 여성 폭력에 대한 신고율, 기소율, 유죄 판결율이 낮은데 대해 우려를 표함. 만연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여성 폭력에 대한 정 보와 데이터의 부족에 대해 우려함." 제49차 회의(2011년)에서도 "20. 여성 긴급전화 설치,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상담소 및 보호시 설 설치 등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조치들을 인지하지만, 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교육 및 의료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사 건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낮고 당사국 내 발생 가정폭력 건수와 일 치하지 않는 것을 우려한다. 또한 성인 성폭력 피해자가 그들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 출해야 하는 형법조항과 그 결과로 인한 피해자의 낮은 고소 수준, 그리고 낮은 기소율 및 유죄 선 고율에 대해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여성경찰의 숫자가 적은 것을 우려한다. 위원회는 부부강간이 당사국의 법률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고 판례만 있다는 사 실에 우려를 재 표명한다"(한국여성단체연합 외, 2011).

³⁾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친고죄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절차의 안전망 구축을 통해 가능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본인의 선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 즉, 모든 성폭력이 비친고죄가 되더라도 본인이 여러 사정으로 소송이 지속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피해자는 수사를 위한 강제소환의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증거보전제도(형사소송법 제184조)를 통해 참고인의 진술을 강제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사과정에서의 참고인 진술은 강요에 의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되며, 피해자 본인이 원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참여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본인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이를 소송으로 진행하고 싶지 않을 때 형사사법절차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들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므로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친고죄를 폐지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각하'로 불기소처분이 된다.5)

이와 같이 피해자가 형사절차 참여의 거부나 기피에 대해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이고 가해자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해야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2차 피해 없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환경이 먼저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현행 친고죄에 속한 성폭력의 경우,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하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고소취하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많은 2차 피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를 피해자 권리로 봐야할지는 의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이지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한해 피해자가 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인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정도희, 2009: 103). 그러나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남겨두거나 합의강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는 것과, 비친고죄 상태에서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권리 차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연이어 친고죄 폐지 권고를 받고,

⁴⁾ 한인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주최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2006. 3. 16)에서 "친고죄가 피해자 보호의 목적으로 마련되었지만 실제로는 가해자 보호의 결정적 장치로 기능을 하며 범죄를 해도 처벌받지 않게 하는 든든한 방패막이로의 역할을 한다"고 비판하고, "가해자들은 고소취하를 끌어내기만 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증거확보가 되어도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국가 법제도가 자기편임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이어진 토론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절차 참여 선택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⁵⁾ 각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 죄가안됨, 협의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참고인 중지, 각하) 의 한 종류로, 고소·고발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고소기간이나 공소시효 도과 등 제기요건이 불충분하여 접수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인권단체들의 강력한 친고죄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친고죄를 고수하는 태도는 성폭력을 여전히 '정조에 관한 죄'에 묶어두고자 하는 의도이다.

나. 성폭력특별법 체계에서 형법으로의 일원화 및 세부규정 마련

1) 형법 개정

성폭력을 규정하는 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할 것인지, 기본법인 형법에 편입되어야 할 것인지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주요 논란거리였다. 1993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법사위 위원들이 성폭력특별법 형태에 반대했다. 반대의 논거는 첫째, 성범죄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형사정책은 일시적인 규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둘째, 특별법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는 없으며, 셋째, 제출된 특별법안은 서로 상이한 형사정책과 사회정책이 하나의 법률안에 그것도 서로 모순되게 규정되어있으며, 넷째, 성폭력 개념의 모호성·법익체계의 복잡성·실체법과 절차법의 혼란으로 인한모순 등이었다(이상덕, 1997: 60-61).

그러나 당시 성폭력을 규정한 형법 제32장의 제목도 "정조에 관한 죄"였던 상태에서 형법에 여성단체의 요구를 담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했고, 입법자나 법조인 누구도 이를 형법으로 반영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를 꾸려 활동했던 여성단체로서는 특별법의 형태라도 성폭력에 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지않을 수 없었다. 또한 가해자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 관련한 조항을 함께 규정하기에는 특별법이 적절한 형태이기도 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기본법인 형법의 성폭력 규정을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협의의 폭행·협박 개념의 문제, 강간과 추행행위의 이분법, 친고죄 등의 문제는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과 관련되어 있어 인식론적·실천적 과제였지만 법률체계상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점이 형법개정의 필요성이다(이호중, 2007: 4-5).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 반대논리로제기되었던 위의 몇 가지 우려들이 실제 문제로 드러난 부분도 형법개정으로 가야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여성인권법연대6에서는 형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로 정하고 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에는 강간의 개념을 확장해 남성성기의 여성 성기에의 삽입 외에 구강

⁶⁾ 여성인권법연대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인권위원회가 해소되면서 2005년에 결성된 회의체로, 서울 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 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의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이에 뜻을 함께하는 이호중 교수 등 학자,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반적인 여성인권법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성교라든가 항문성교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유사강간형태의 범죄들인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까지 강간에 준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를 부녀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람"으로 넓히고 있다. 이는 강간죄 구성에서 남성 성기중심적인 사고의 전환이며,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의(개정안 306조의 2) 규정에 "사람"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내강간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의없는 성적 행동"과 "성적 행동의 강요"라는 새로운 용어로 강제추행을 구분하고 있다. 이 개념은 그동안 여성인권법연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기존의 강제추행에서 제외되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왔던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였다.

이 법안은 임종인의원의 발의로 17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년여 동안의 지난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통해 획기적인 발상의전환을 한 개정안이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당시 국회나 정부, 사회가 갖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형법 개정 관련 논의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당시 개정안에서 담았던 친고죄 폐지와 아내강간 처벌, 그리고 비동의간음죄 신설 등의 내용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충분히 유용하게 변화를 주도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다시 형법개정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이 외에도 피해자 권리 규정을 좀 더 촘촘하게 마련하여 판단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불합리를 줄여가야 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선택권

비공개재판청구권의 범주가 중인신문 시에만 한정된 것도 실제적 피해자 권리보장에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공개재판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중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신문 등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권의 범주를 폭넓게 늘릴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피해자 측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판단에 의해 비공개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판사는 비공개재판을, 피해자는 공개재판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피해자로서 공개재판에서 제기하거나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자 진술권이 비공개재판의 보호막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자율적 인격주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관점에

서 볼 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비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도 필요하다(이호중, 2006-b: 76). 피해자가 공개재판이냐 비공개재판이냐의 선택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성폭력 피해자는 비공개재판을 원할 것이라는 예견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통념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 시에도 피해자의 사용여부 선택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보호가 되면서 법관이나 배심원들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차단막 설치에 의한 진술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정보권 보장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사 전에 피해자의 형사법절차상 권리, 각종 지원가능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교부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진술조서 맨 앞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서면 항목에 피해자가 가명수사를 원하는지, 원래주소지나 전화번호가 아닌 곳으로 연락해줄 것을 신청했는지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가해자를 조사할 때에도 가해자 권리의 고지 외에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협박 등의행위 시 처벌되거나 양형에 불이익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및그 주변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합의를 원하는 경우 담당경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타진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면 확실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을 고지하고, 실제 양형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1) 피해자에 대한 서면을 통한 피해자 권리고지, (2) 피해자와의 연락방식, 가해자 접근 제한 조치 신청권, 가명수사신청권 등에 대한 조사의무 부과, (3) 가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고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것, (4) 법원 예규, 규칙 등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대폭 확충하여 입법화하는 방안 등관련 내용을 연결시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의 필요성은 재판확정 기록이나 소송중인 기록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현 규정은 검찰에서 보관하는 재판확정기록은 검사에 의해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그러나 법원에 보관하는 소송 계속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제한의 근거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피고인이 양형상 이익을 얻기 위해 합의나 공탁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고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소송계속 중인 기록에 대한 관리는 더엄격해져야 할 것이다(오승이, 2011: 183).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전담재판장 간담회를 개최

하여 기록열람 등 법원에 의한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고려하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4) 피해자 인격권과 신변보호권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의자/피고인 및 그 가족, 주변인에 의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폭력특례법 제21조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을 준용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검사는 특정 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에 해를 입는 것이 이 규정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이다. 공판절차로 이행되지 않아 아직 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인정될 지가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신청권도 인정되고 있지 않다. 필요한 조치에 피의자/피고인가 피해자 측 가족과 주변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생활공간에 나타나서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는지도 의문이다.

성폭력특례법(제22조)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제1항과 관련하여 그 주체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라고 해서 가해자 및 가해자 측 가족, 주변인도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그 금지되는 행위 형태가 출판물·방송매체·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 한정된다. 청소년성보호법(제28조의 2)에서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청구 주체가 검사로 한정되어 있다. 그 제도의 취지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것이 수사·재판과정에서 가해자 측의접근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이고, 법원을 통한 정식 보호처분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면에서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처분으로 활용이 가능할지도 남겨진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공식적인 고지

를 하는 것이다. 가해자를 처음 소환하여 조사를 할 때,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피해자의 가족·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 양형 상 불이익을 가질 수 있고,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이 아닌 그 부모·기타 가족·친인척·기타 주변인에 의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불이익하게 작용될 수 있고,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 있음을 경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 조사가 개시될 때 피해자의 권리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면서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 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가치는 가해자의 방어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가해자의 방어권 은 수사절차상 가해자가 가지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형사법 담당자의 인식전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친고죄의 폐지는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한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피고인을 방어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성폭력 통념에 기반 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게 된다. 변호사는 보통 피고인의 대리인 지위를 갖게 되지만 변호사법(제1조)과 변호사 윤리규칙(제1조)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리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특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것은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규칙(제74조)은 위협적이거나모욕적인 신문, 중복신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제74조)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위반에 대한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고 단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근거하여 신문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인데 실무상 그 경계가 모 호하여 특별한 제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변호사 윤리규정에는 성폭력 피해자 의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데,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 고 위반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 지침의 마련과 징계는 변호사협회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 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만약 변호사협회가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여 지금과 같은 상황 이 지속된다면 변호사의 공익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5) 피해보상권 보장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이기금이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시행으로 인해 연간 600억의 피해자 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에 일반예산으로 책정되었던 항목이 기금으로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실제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본 논문 4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실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한 보상기준에는 일반 성폭력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과,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도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별적인 합의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개념은 피해자의 권리중 하나가 아니라, 돈 받고 소를 취하하는 조건이 되면서 그 의미가 쉽게 변질되거나 뒤바뀌기도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 배분과 활용면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범죄 피해 배상을 형사절차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고, 사실상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시정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범죄피해의 배상청구가 형사소송에 통합되어 이루어지며 범죄자가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보상하고 나머지는 범죄자로부터 구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6) 조력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변호인선임권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피해자는 범죄의기소권을 갖는 검사가 변호인의 역할까지 해주길 기대하지만,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익의대변자로서 '객관성'이라는 명목으로 법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는 누구의 조력도 없이 '나 홀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동석이 허가된 신뢰관계인은 어떠한 조언이나 참여도 허가되지 않음으로, 심리적위안 이외의 실제적 도움은 기대할 수 없다. 반면에 피의자/피고인은 변호인 선임권이 있어사건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여 변호를 하고, 의견의 진술, 고소인이나 증인의 공격 및 피고인 방어 등 변론을 하며,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한다. 정작 피해자는 단순한 고소 대리인으로서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을 뿐 실제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의석방, 양형 또는 가석방을 심리하는 공개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적절하게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7)

따라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주체적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변호인 제도는 피해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실체진실의 발견에도 기여하며 절차의 지연을 방지할 수도 있다(정도희, 2011).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법무부의「범죄피해자보호 기본계획(2007-2011)」에서도 이미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변호인제도의 도입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 지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반위에서 가능한 것이며, 제도 도입 시 피해자권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또한 1997년에 도입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는 구체적으로 동석자의 범위나 역할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동석여부가 결정되는 등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동석의 대상 및 역할이 공식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동석여부는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지만, 만약 수사관이나 재판부에서 동석을 거부한다면, 거부사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거나 거부 시 서면으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실제 상담현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어떤 경찰과 검사, 판사를 만났느냐에 따라 형사사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 따라서 이들 전담자의 인권감수성8)을 키우고, 성폭력 수사 실무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이러한 교육은 성폭력 전담자만이 아니라, 이들의 업무 방향을 조언하고 결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선임자들도 함께 받아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전담수사관과 전담 재판부 교육은 연간 1~2회의 단시간 연수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DB를 구축하거나 정기 세미나를 운영하는 등 실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권감수성을 쌓아갈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또한 시급하다. 2006년 도입된 성폭력전담

⁷⁾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 양형 또는 가석방을 심리하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류병관, 2011: 47).

⁸⁾ 성폭력피해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찰을 신뢰하는 데는 "이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도 되겠느냐?. 전화는 어떤 번호로 소통을 하는 것이 편리하겠느냐?"는 등의 섬세한 배려가 있은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다.

검사, 전담 사법경찰관제에 이어, 2008년에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로서 우리나라 성폭력피해 피해자들은 첫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성폭력전담자에 의한 사건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들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구조인가를 살펴보면, '성폭력전담자'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단지 2년 이하 동안에만 전담자로 존재할 뿐이다. 사실 성폭력피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사의 노하우를 갖기에 1~2년은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더욱이 아동이나 장애인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데 현행 구조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사와 공판검사가 다르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판검사가 바뀌는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전담수사관제의 확립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이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폭력 사건의 전문수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1~2년 간격의 순환보직이 아닌, 10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하며 전문성을 쌓아갈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전담수사관이나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꼭 여성이어야 하는가는 여러 측면에서 회의적이다. 실제로는 여성수사관제 보다는 성폭력범죄 전담반의 운용과 수사관계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담당자의 성별보다는 어떤 시각으로 이 사건을 접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여성형사나 검사가 성폭력 사건의 수사에 더 적절하다는 견해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는 한편으로 남성 수사담당자들의 편견이 시정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고, 오히려 여성들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그리고 여자 검사였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다거나 더 무겁게 처벌되었다는 불필요한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간의 여성단체들의 주장을 '여남 대립구도'에서의 문제제기로 여기게 하는데 일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성폭력 전담여성수사관제도 보다는 담당자의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수사 방식의 전문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이미경·이경환, 2008).

이 문제는 검·경의 인사시스템이 현행 순환보직제를 택하고 있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한 과제이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전문성 있는 성폭력전담자가 될 수 있도록 10년 이상씩 한 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차선책으로 각 검찰청마다 성폭력 전담 검찰수사관을 배치해 그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들이새로 부임하는 전담검사와 팀을 이뤄 성폭력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아는데특히 검찰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어려운 사건에 해당하여 이것만 전담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침마련과 함께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많은 여성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성폭력은 남성에 의한 여성 억압의 실질적 기반이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폭력의 한 형태라고 주장한다. 즉 성폭력은 수 천년간 이어져 내려온 가부장제 문화의 기반이다. 문화란 넓게 이해하면 개인 사회성원의 사유와 행동의 기반이되며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로부터 습득하고 전달받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등일체의 것을 포괄하는 삶의 방식이다. 이와 같은 삶의 방식으로의 문화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1993년 12월 UN총회에서 '여성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이 채택되었다. 이 선언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을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하나의 국제적 이슈로, 특히 성차별 이슈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5년 9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 선언 및 북경행동강령은 여성의인권을 핵심적 관심 영역들 중 하나로 확인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사실은 상당 부분 형사사법절차 담당자의 성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법·제도적 차원을 넘어 문화의 문제이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 못지않게 성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변화가 중요하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예방과 직결된다. 따라서 사회 변화의 한 흐름인 양성평등 주류화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성인지적 감수성과 지식을 지닌 형사법 절차 담당자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현직 수사·공판 법조인과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기관에서의 법여성학 개론의 필수화와 다양한 법여성학 과목의 전공화, 법여성학과 기존 법학 과목간의 내용적 통합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 관련부처 및 NGO와의 협조체계 구축

현행 피해자 권리 관련 제도의 이행과정을 보면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 산발적으로 업무가 나뉘어있거나 중복되어 진행되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일례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조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과의 관계도 부처 간의 조정이 요구된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일정 훈련을 거친 전문인력을 아동 성폭력 피해 신고가 많은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우선 배치, 피해자진술조사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전문가의 심층면접을 통과한 인력들로써,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의 피해자 진술조사 과정에참여하여 피해자 진술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의 진술조사 전문인력 제도 역시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실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조력을

⁹⁾ 여성가족부, 2011. 4. 25. 보도자료 참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보호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에서 이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등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신뢰관계인·진술조사 전문인력·법률조력인을 만나게 된다. 문제는 이들의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가 아직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가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피해자가 갖는 권리를 고지할 것인가를 비롯해, 누가 형사사법절차상의진행과정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세 지원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서 피해자가 이들 조력인을 대면하여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문제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소와 동시에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고지받은 후 실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법률조력인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로 보이는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제도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 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위탁해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사 본안, 민사 집행, 형사 고소, 형사 본안, 가사사건 등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조력하는 등 일체의 법률구조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여성가족부의 법률구조사업과 법무부의 법률조력인 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현행 구조라면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성인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비슷한 사업을 두 부처에서 각기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인적·물적 효율성의 문제도 대두된다. 따라서 각 부처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하고 이슈를 제기한 것은 정부가 아닌 여성운동 단체들이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정부는 NGO와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도·감독'을 하려고 한다. 제도화로 인해 일부 상담소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약 6,00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지도·감독이라는 행정적 용어를 사용한다. 분기별로 구청 직원이 상담소를 방문해 업무일지를 비롯한 재정 서류를 확인하며 감사하고 지적한다. 심지어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들어온 인원이 몇 명인지 직접 보고 확인하겠다면서 주민등록증과 입소자 얼굴을 대조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단체 활동가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 기준을 요구하거나, 출근부 도장을 찍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개입하려한다. 뿐만 아니라 단체의 외부 교육활동이나 대정부 시위활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산지원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상담통계나 회계정보, 의료비를 지원받는 피해자들과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정부와 피해자의 개인정보권의 침해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대립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이제 상담소나 쉼터의 운영을 정부에 맡기고 활동가 및 운동단체는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비판·제언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이항 대립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도화는 그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이뤄낸 성과이므로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제도화는 믿을 만한 자원이며, 운동의 성과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신상숙, 2007)라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제도화의 두 얼굴10)에서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상호 협력해갈 지는 지난한 토론과 성찰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4. 일상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의 확산

가. 피해자들의 다양한 대처와 역량강화(empowerment)

모든 반성폭력운동, 법과 제도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사회통념에 맞선 피해자들의 특별한 용기와 분투(struggling)가 기반이 되었다. 피해자가 죽거나 가해자를 죽이는 극단적인 형태의 말하기!!)부터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친구나 가족·직장·상담기관에 피해사실을 드러내 부당한 피해에 대한 분노와 이로 인한 고통의 심각성을 알려낸 수많은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있었다. 여성단체에서 주최하는 성폭력 피해자 말하기대회(speaking out day)!2)는 피해자들이 대중들 앞에서 피해의 고통과 극복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며 치유와 운동의 장으로 자리잡아 가고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고, 성폭력 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재인식하며 새롭게 세상과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호신술 등 자기방어 훈련도 주요한 역량강화의 하나이다. 최근 법적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들이 늘고있다. 혹

¹⁰⁾ 제도화 논의는 김현정, 2000; Jung, 2002; 서미라, 2002; 김보연, 2006; 신상숙, 2007 참조.

^{11) 13}년간 의붓딸을 강간해온 아버지를 살해한 김○○·김△△사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 형태의 '말하기'와 동시에 피해자의 자살도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집단성폭행 피해 여중생이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동아일보), 9월에는 "딸 마중나간 어머니 성폭행당한 뒤 피살"(중앙일보), 10월에는 "성폭행 주부 비관자살"(한겨레, 10. 6) 등 성폭력 피해로 자살한 피해자들이 보도되었다. 이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때문이었다. 그들이 남긴 유서들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쏟아진 사회적 비난으로 인한 고통이 묻어나 있었다. 문제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자살이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닐 정도로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가해자를 죽이거나 스스로 죽음을 택한 피해자들의 '말하기(speak out)'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좌절이자 절규, 그리고 저항이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와 같은 극단적 형태를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말하기'가 여성인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변화가 있다.

^{12)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현재 각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들에 의해 부산, 대구, 전주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생존자 말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김현영 (2011), 권김현영·시타·어린(2003), 권김현영·김민혜정·변혜정(2011), 마도(2011), 아오리(2011), 한새 (2011) 참조.

은 형사나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금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피해자들이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조모임결성이나 지지집단의 네트워킹, 지역사회 폭력지킴이활동, 학교폭력지킴이활동 등 자신의 문제를 주제로 한 활동에 조력을 하거나 당사자 활동을 하기도 한다.

여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NGO에서는 피해자들을 전화나 면접, 온라인상으로 상담한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주로 심리적 지원과 법적·의료적 지원, 쉼터지원 등을 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상담을 넘어서 피해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담자들이 현재 상황에 적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역량강화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을 인식하고 문제제기하여시정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다양한 성문화 운동의 전개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바꿔가는 일은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이다. 피해자 상담·지원을 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주요사건의 판결이 내려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한퍼포먼스, 온라인 토론 및 캠페인을 하기도 한다. 요즘은 블로거뉴스나 트위터 등을 이용해네티즌과 소통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널리 열리고 있는 안전한 밤길되찾기 행사(Take back the night)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밤길을 다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행사는 안전한 밤길을 보장하라는 대정부 시위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밤길을 노니는 여성들의 축제이기도 하다. 더불어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미인대회 중계 반대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고, 성매매 반대를 위한 범국민캠페인 등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활동은 반여성폭력운동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케 하는 또 다른 주요한 축이다.

반성폭력운동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주부와 대학(원)생들이 상담자원활동, 사무보조 자원봉사, 행사기획단 등으로 활동한다. 대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자원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본격적인 여성운동가로 성장하기도 하고, 회사에 취직해서도 매 행사에 지속적인 참여는 물론 후원회원을 모으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가정주부로 있다가 상담원이 되어 활동하는 많은 주부들은 상담소 활동을 통해 자율적

여성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하게 된 계기였다고도 한다. 뿐만 아니라, 법조인, 의료인, 학자 등의 전문가 집단에서도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NGO 활동 중 눈에 띄는 성과는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한국의 경우, 거의 황무지였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이 지난 20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마련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24시간 항라인과 원스탑지원센타가 설치되고, 해바라기아동센타와 성폭력상담소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반여성폭력운동단체들이 꾸준히 법안마련을 요구하고, 거리 캠페인·토론회 개최·기자회견·언론활용 등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오고 있다. 또한 활동가들이 각종 정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판, 의견제시 등을 하기도 한다. 여성계만이 아니라, 시민운동과 연대해 여성폭력 관련 주요사건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나 여성폭력 관련 법안 제·개정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권, 노동권, 평화, 환경운동 등에도 연대한다. 국제적 네트워킹은 주로 국제회의 참여나 공동캠페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서명운동을 국제적으로 함께하기도 한다.

미디어는 반여성폭력운동과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가면서 약간의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사안들을 이슈 화이팅 하는데 언론은 순기능적인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언론의 주된 관심은 누구나 공분할 수 있는 어린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인 사건들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또한 보도의 접근방법이 매우 선정적이고 일회적이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연대해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또때로는 TV의 메인 뉴스나 토론프로그램에 활동가들이 출연하여 성폭력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5. 맺음말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외적 성장이 실제 여성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 반성폭력 법·정책이 구체적으로 풀어갈 과제로는 첫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둘째,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셋째,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의 안정화. 넷째, 성폭력특례법의 처벌조항을 형법으로 일원화. 다섯째,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개인정보 집적 폐지. 여섯째, 반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교욱 내 통

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꼽을 수 있겠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그러나 법개정보다 더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난한 논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법·정책의 이행과정에의 주목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수사실무와 재판과정,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실무가 성폭력 관련 법제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한다. 무엇보다 해당 법과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일상에서 성폭력 예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제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하나하나의 이행과정을 담당자의 인식점검에서부터 시작해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반 성폭력 법과 정책의 지향점을 다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반성 폭력 법제화에서 '성폭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왜 성폭력을 반대하는지 등의 근본 적인 물음들에 다시 직면해야 한다.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 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인식은 우리사회가 피해생존자를 '보호할 대상'이거나 '의심과 비난' 하는 양극단으로 위치 지우는 것에 대응할 근거를 열어주었다. 또한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 자가 여성이라는 현실은 젠더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성 폭력이 성충동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좀 더 힘(권력)있는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인권침해라는 점은 성폭력문제의 심각성과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 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자어린이나 남성피해자들의 문제를 이해하게 했다.

이와 같은 인식들이 지금까지 법·정책에서 성폭력 문제해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에 도, 아직 대중과 호흡을 통한 일상의 실천을 끌어내지는 못한 이유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대중들이 인식하는 성폭력이 과연 인권존중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지, 혹은 무력하고 불쌍한 피해자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접근인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고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처벌강화 위주의 법·정책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노력은 하지 못했음을 반증해준다.

이제, 우리사회는 성문화가 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폭넓은 연구,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인권운동단체와 학계, 정부 유관기관, 법조계와의 끊임없는 대화, 소통이 요구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때로는 현상을 비틀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때로는 핵심을 찌르는 명쾌함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어우러지는 새로운 상상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 상상력과 열정은 지금까지 법조인들과 반성폭력 법·정책운동가들이 꿈꾸어왔던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현실로 만들어 왔던 성과를 넘어, 진정한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여성특별위원회(1998),「여성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및 향후과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 김보연(2006),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선영(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현정(2000),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류병관(2011),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미국의 범죄피해자 권리법(2004)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편),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35-56쪽.
- 민경자(1999), "성폭력 여성운동사",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여성의전화 엮음, 한울아카데미.
- 박선미(1989),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변혜정(2008),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편),『한국여성학』, 제24권 3호, 111-145쪽.
- 신상숙(2007),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여성가족부(2011), 2011. 4. 25. 보도자료.
- 오승이(2011),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방안",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 건 재판절차 개선방안」심포지엄 자료집(2011. 1. 7), 젠더법연구회.
- 유엔(2008[2006]), 「여성폭력 종식: 담론에서 행동으로」, 여성부(역), 여성부(United Nations,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from Words to Action).
- 이경환(2011), "정부의 성폭력가해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 한국 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2011. 11. 28).
- 이경환·이미경·장임다혜(2011), "법의 '객관성'을 재구성하다",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이매진.
- 이명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 피해여성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_____(2012), "반(反)성폭력 정책의 흐름과 최근 쟁점", 「미래여성정책포럼」의 섹슈얼리티 및 반폭력분과 워크숍 발제문(2012. 4.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미간행).
- 이상덕(1997),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재상·이호중(1992),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형사정책연구』, 제3권

3호, 61-113쪽.

- 이종걸(1992), "성폭력특별법 제정이냐, (형법)개정이냐?", 「성폭력추방운동 정책 토론회」, 녹취록,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칭)(미간행).
- 이호중(2006), "형사절차와 인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양 대학교 법학연구소(편), 『한양법학』, 제19집, 45-84쪽.
- ____(2007),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성폭력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2007. 2. 8), 여성인권법연대·임종인 국회의원 사무실.
- ____(2008), "성폭력 2차 피해의 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토론회 자료집(2008. 8. 11), 국회의원 최영희·한국성 폭력상담소.
- 장애여성 공감(2011), "장애인 대상 성범죄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도가니법' 개악에 대한 입장" (http://www.wde.or.kr/?hid=talk&cateno=65&ano=434).
- 정도희(2009),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정유석(2008),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시스템: 반성폭력운동과 만나는 풍경, 「나눔터」, 제62호, 한국 성폭력상담소.
- 조지영(2011), "민주노총 내 성폭력사건의 논쟁지점과 그로 인한 사건 해결의 문제점", 「5,785개의 물음표를 풀다」, 2006~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사례분석 토론회 토론문(2011. 11. 8), 한국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미간행).
- 한국여성단체연합(2008), "여성인권 정책평가 및 향후 과제-대(對)여성폭력 정책을 중심으로",「참여 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자료집(미간행).
-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책", 한국피해자학회(편), 『피해자학연구』, 제3호, 33-52쪽.
- ____(2006),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판례바꾸기 운동, 그 두 번째, '최협의설 비판(2)」,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2003),「성폭력 보도과정에서의 2차 피해 없는 방송문화 만들기」, 한국성폭력상담 소(미간행).
- (2012), "2012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반(反)성폭력 정책 제안서"(미간행).
- 한국여성단체연합 외(2011), "2006~2009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Report", 한국여성단체연합·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여성인권을 지원하는사람들·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공익변호사그룹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한국여성의전화(201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자료집(2011. 12. 13)(미간행).
- Corrigan, Roseann(2004), "Talking to Strangers: Feminism, Sexual Predators and Rape Law Reform", Ph.D thesis, New Brunswick: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unpublished).
- Jung, Kyungja(2002), "Constitution and Maintenance of Feminist Practice: A Comparative Case Study of Sexual Assault Centers In Australia and Korea", Ph. D thesis,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unpublished).

〈참고자료〉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反성폭력 정책 제안서"13)

1.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 현황과 문제점

- 성폭력 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의 목적은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보다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또는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심각히확산시키고 있다.
- 현재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은 폐지됐으나, 비장애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존치하고 있다.
- 피해자의 개인적 치부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성폭력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2.3%에 불과하다 (2010년 여성가족부, 강간 및 강간 미수). 때문에 성폭력 범죄가 암수화 되고 실제로 처벌받는 성폭력 가해자수도 매우 적다. 가해자 처벌과 이를 통한 재범 방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역할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을 존속시킴으로서 그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가해자 처벌의 책임과 부담을 피해자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 친고죄 조항의 범죄는 고소 취소 시 해당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과도하게 합의를 종용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게 된다.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에 이어 2011년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친고죄 조항과 이로 인한 낮은 기소율과 유죄 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¹³⁾ 이 자료는 한국성폭력상담소(2012),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反성폭력 정책 제안서"의 내용입니다.

- 성폭력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 친고죄로 인한 불기소 및 무죄판결 통계 공개
- 가해자 또는 수사·재판담당자로부터 합의 종용 등, 친고죄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형사사법절차상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성폭력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 후 사법기관, 언론, 의료기관, 가족, 친구 등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수사·재판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이해와 전문성 부족은 이러한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고, 결국 이는 낮은 신고율로 이어지고 있다.
-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08년, 2009년 상담통계에 의하면 고소를 진행한 피해자의 25% 정도가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의 부당함과 고통을 호소하였다.
- 그동안 반성폭력운동 진영의 문제제기로 현행법체계 내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제, 전담재판부 도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25조), 진술녹화제 도입과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심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30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된 법규정과 제도들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무의 변화를 크게 가져오지 못하고 담당자들의 전문성 및 인권감수성의 미비로 여전히 성폭력 2차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 입법례의 경우, 미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은 형사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과거 성관계 이력의 증거사용 및 채택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은 청소년 사법 및 형사증거법 제41조에서 피해자의 성이력 증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 외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 는 피해자의 성이 력 증거 채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제70조), 피해자의 성적 품행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규정(제71조)하고 있다.

- 수사·공판절차에서 신문내용 제한 규정 신설 (피해자 품행, 평판, 직업, 성관계 이력 등)
- 형사사법 담당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피해자 경험과 관점 존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 수사·재판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사시스템의 개선 및 예산 투자
- 법률조력인제도 성인으로 확대

3.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 안정화

■ 현황과 문제점

-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무료법률 구조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심리적,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 자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비현실적인 수준의 시설생계비 지원금과 학교생활지원금으로 인해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2012년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을 작년 대비 0.2% 증액(390억원)하는 데 그쳤으며, 법무부는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예산을 삭감하는 등,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 2011년부터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이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하 '범피기금')으로 편성되어 운용되고 있다. 그런데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범피기금으로 수행하게되어, 사업 수행주체와 기금 운용 및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그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여성 가족부가 현재 한국사회의 성차별,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인지하고 성 폭력피해자지원정책에 대한 정확한 상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 수행 주체와 기금 운용 주체가 다르고 여성가족부에 사업운영만 담당할 뿐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이 없고, 예결산 심사도 법무부를 소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과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부처 간 예산 싸움만 반복되거나 효율성과 기금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여성가족부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 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체계 안정화를 위해 성폭력피해자 지원예산을 여성 가족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

4. 형법 개정 : 성폭력특별법의 처벌조항을 형법으로 일원화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성폭력 관련 법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대해 기본법인 형법에는 간략한 규정만 두고, 가중적 구성요건과 기타 사회적으로 중요한 성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은 수개의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률 전문가조차도 적용 법률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고, 구성요 건이나 양형 등에 있어 체계정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 성폭력에 대한 관점이 부재한 성폭력 개념 규정 성폭력은 '정조' 또는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 권력관 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개인의 성적자유와 자존감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현행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제목은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자기 결정권'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 협소한 강간죄의 대상과 행위 성폭력은 성별과 상관없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관한 범죄이나, 현행 형법이 강간을 부녀를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 즉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직접 삽입되는 성교행위 에 한정하고 있어 남성은 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등 유사성교행위나 이물질을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는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 분류 되어 강가죄에 비해 법정형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외국의 입법례 및 국제법상 강간 규정

독일	여성뿐 아니라 모든 개인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주체로 승인 (형법 제177조) 성교 또는 신체삽입과 연관된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프랑스	강간을 사람에 대한 성적 삽입행위로 규정 (제222-23조)
미국 주법	'성교'를 구강성교와 항문성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현행법상 '법률상의 처'가 부녀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고 해석상으로도 부녀는 혼인 여부를 불문한다고 확립되어있으나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07년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권고 제 18항에는 정부가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이 폭력으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인식 재고의 노력 강화와 부부 강간 범죄화를 권고하고 있다.

※ 외국의 입법례 부부강간죄 규정

미국, 영국, 독일	부부강간죄 성립 인정
프랑스	부부강간죄 성립 인정 및 가중처벌

성폭력은 타인에 대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행위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행동을 한 행위만으로도 범죄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만 폭행 및 협박이 없는 경우, 폭행 및 협박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한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성폭력의 특성을 간과하는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성폭력 범죄를 기본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는 고소기간의 개념과 중첩 되어 공소시효와는 별도로 법적해결가능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총 상담건수 중 약 10%가 공소시효 도과한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어린나이로 인한 인식능력의 부족, 적절한 성교육의 부재로 인한 사건인지 지연, 자책감과 수치심, 주위 의 비난과 불신,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고소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11년 법개정으로 장애인과 13세 미만 아동 대상의 강간죄에 대 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으나, 비장애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는 유지되고 있 어 공소시효가 도과된 수많은 사건의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회피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 정책과제

- 형법 32장 전반적인 체계 수정 및 개선 : 성폭력특별법의 성폭력 관련 처벌조항을 형법 으로 흡수.
- 형법 32장을 "성적자기결정권침해의 죄"로 변경 성폭력이 '정조' 또는 '가해자-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 권력관

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개인의 성적자유와 자존감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드러내기 위해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변경

- 강간죄의 대상 확대 및 행위 확대 성폭력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및 부부 강 간죄 도입
- 성폭력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확대하여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 회피 방지
- 비동의 간음죄 신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동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 제수단이 행사되지 않았더라도 현실에서 작동하는 성별권력의 억압적·폭력적 요소를 포착하여 가해자 처벌을 담보
- 강간피해로 인한 인공유산의 실효성 확보

5.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개인정보 집적 폐지

■ 현황과 문제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수집 및 집적됨으로써 성폭력피해생존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 정부는 안 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요하며 성폭력피해자 지원의 가장 기본인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주민번호를 대체한 사회복지전산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입소자 정보를 기록하고 있으나, 전산관리번호의 경우 결국 주민 등록번호와 연동하여 관리되어 피해자 정보 노출의 가능성이 있다. 성폭력피해자임이 드러났을 경우 사회적 편견과 낙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 현 전산관리번호에는 시설번호가 포함되어 시설 소재지 노출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가해자가 찾아오는 등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시설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고려하면, 시설이 용 종료 후 5년간 입소자 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전산망을 통한 성폭력피해생존자 개인정보 집적 폐지
- 성폭력피해생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통계 시스템 구축
- 각 부처별 중복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조정 및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
- 성폭력피해생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 지원체계 마련 및 관련 부처를 여성가족부 로 다일화

6. 反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교육 내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해 학년별 10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 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과 내 성교육 시수가 할당되어 있으나 대부분 집단교육으로 일회적 특강의 형태로 실시되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성폭력은 타인의 신체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이 성폭력의 발생구조와 맥락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스스로를 긍정하고 타인의 신체와 인격을 존중하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상호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방법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교육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몸가짐을 조심시키거나 피해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성폭력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로만 귀결될 위험이 있다.
- 성폭력예방교육은 중앙정부 차원의 기획과 조정이 필요하며, 학교와 부모, 지역사회까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유엔 인권교육프로그램은 학교영역에서는 학생(유치원생부터 전문직원훈련원생까지 포함), 교원,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의원 등 입법관계자, 사법부, 행정부를 대상으로,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일반시민, 전문집단,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19일 유엔총회는 세계인권교육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 2차 시기 행동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가입국은 인권교육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를 2015년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 정책과제

- 공교육 내 성폭력 예방교육 실태 조사 실시
- 성인지적 인권 감수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 제정
- 성폭력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공교육 내 통합적 인권교육 체계 수립

토 론 문

윤 웅 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서기관)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현 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조 인 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토론문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서기관)



"성폭력피해자 권리 관점에서 본 성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토론문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20여년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제도 및 사회환경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기소율이나 유죄판결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개선될 사항이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사사법기관에서 드러나는 성폭력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데,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범죄를 드러내어 법의 처벌을 받게 한다는 것이 아직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폭력 행위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이것이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의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20여년에 불과합니다. 성폭력 범죄 및 피해에 대한 사회 및 재판부의 인식은 본 발표문에서 논의한 것 같이 앞으로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발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관련된 형사법적 환경이나 사회적 여건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면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고소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일 것입니다.

법과 인식의 괴리

위키리스크의 창립자 줄리안 어산지가 지금 런던의 에쿠아도르 대사관에서 망명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받을 위기에 처하자 에쿠아도로 대사관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기소항목은 상대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한성관계에 대한 것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강간법에 있어서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과 법의 괴리는 상당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온 힘을 다해 저항해야 합니다. 지금도 폭넓은 범위의 비동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일반인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2009년 연구에 의하면, "사귀는 사람이 성행위 도중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지속하는 것을 성폭력이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19-24세 남성의 62%, 25-30세 남성 54.5%, 19-24세 여성의 76.5%, 25-30세 여성 62%가 동의하였습니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남녀를 포함하여 20대의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비동의 성관계가 성폭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은 이 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협의의 폭행과 극렬한 저항은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이루어질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행동유형입니다. 발표자가 지적한 것 같이 조사자료나 상담자료에 의하면 성폭력가해자의 대다수인 70% 정도가 피해자와 아는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의 성폭력 행동양식은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음주가 동반되거나, 대화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의 경계심이 해제된 상태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국에서도 전통적 강간법 하에서는 아는 사이나 사귀는 사이에서의 강제적 성관계는 법적으로 강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었다고 합니다.

조사자료 및 상담통계와는 달리 경찰이나 검찰통계에서는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 대다수 인 것은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건 대다수는 사법기관에 보고되지 못하고 피해자 가슴에 묻어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동의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법개정이 이루 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선후배, 사귀는 사람 등에게 당한 보다 많은 성폭력 범죄가 사법기관에서 다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서구에서도 전통적 강간법이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사법제도 차원의 인식 변화가 서구에서 있었는데,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1) 미국에서 강간법 개정에는 두 가지 주요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범죄 입증 어려움을 겨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부가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1872년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261조에 강간죄가 신설되었는데, 세 가지 경우로 강간을 분

¹⁾ 미국사례는 2009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류하였습니다. 첫째, 여성이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인데, 여성의 나이, 정신건강, 의식불분명을 고려할 때, 피고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을 경우. 둘째, 피고가 혼인을 빙자한 혼외 성관계, 셋째, 강압적으로 행해진 성교행위. 1872년 법에서의 강압적 강간은 '여성의 저항이 있었지만 강압과 폭력에 의해 여성의 저항이 무력화'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즉각적으로 중대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겠다는 위험 때문에 저항을 하지 못한 경우'에 성립. 당시 미국에서도 피해자의 저항을 요구하지만,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위협은 즉각적이고 중상을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보복위협, 자녀위협, 경미한 해는 위협으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즉각적 고소를 요구하고, 피해자 주장의 신뢰성을 고소시점과 연결지어 판단했습니다.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판단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거 성력(prior sexual history)에 대한 증언을 인정했습니다.

입증요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강간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정됩니다. 첫째, 재판부가 피해자의 과거 성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s)'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법으로 채택된다. 둘째, 1991년 캘리포니아 형법 제261조 개정에서 강간 성립 요건의 실질적 위협과 관련된 내용이 확대됩니다. 보복위협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권한을 사용한 위협만으로도 강간죄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셋째, 가해자에 대항하여 여성이 신체적으로 저항해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지고, '타인으로부터 강제, 폭력 강박, 협박 또는 즉각적이고 불법적인 신체 상해에 대한 두려움을 수단으로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성교를 할 때' 강간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삽입되었습니다.

1991년 데이트 도중의 강간을 인정한 재판부의 사례는 강간 판결에 있어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성이 데이트 도중 협박을 당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강요상태에 놓여 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남성의 "공격적인 신체접촉"과 "적대적 태도" 그리고 여성이 느끼는 불안감으로 여성은 강간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해당 남성의 공격적 신체적 접촉과 적대적 태도가 없었다면, 이 여성은 그러한 행동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친고죄 폐지

성폭력 피해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다고 발표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전통적 사회적 통념이 강하여 피해사실을 드 러내는 것 자체로 사회적 명예가 실추되던 시기,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어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할 여지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피해자 지원에 참여하셨던 발표자는 친고죄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증폭시키고, 성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흔들어 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있어 친고죄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지지하는 연구물 및 관련 자료가 축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소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가해자의 행동 방식과 피해자가 당하는 고초에 대한 자료가 광범위하게 축적되어야 합니다. 또, 일반인, 특히 여성들은 친고죄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합니다. 친고죄의 폐해에 대한 자료가 단단히 축적되어 있고, 여론을 통해 홍보가된다면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폭력 피해 말하기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험은 개인별로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곳이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일 것입니다. 여타 범죄 피해자와는 달리 오늘날에도 대다수 성폭력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는데 조심스러워하기에 이들의 경험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무력하고 슬픈 존재," "치유가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 "영혼이 살해된" 사람과 같은 "획일화된 피해자상"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스테레오 타입과 다른 방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여 자신의 피해경험을 담당하게 폭로하며 쾌활하게 일 상생활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세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버라이어티 생존 토크쇼(Variety Survival Talk Show)" 출연자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실재 인물이라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에 놀라는 저 자신이 구식으로 느껴졌습니다.

NGO에서 준비하는 생존자 말하기는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이것의 효과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드러내고 언어화함으로써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일반인들은 정형화된 이미지로 피해자를 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절도, 폭력, 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주위 사람에게 말하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피해자가 얼굴을 드러내고 편하고 당당하게 피해경험을 말할 수 있을 때, 가해자는 죄인이 되어 움츠러들 것입니다. "생존자" 말하기는 당사자 치유 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법조인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강간이 국제법상으로 인권(human rights)의 침해로 인정되지 못하다가, 1993년 여성운동가들이 조직한 비엔나 법정에서 전 세계에서 모인 33명의 여성들은 위안부 경험, 전시의 강간피해, 친족성폭력 등 다양한 유형의 피해경험 말하기를 통해서 강간을 여성인권 침해로 인정받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말하기를 통해서 여성들이 꽁꽁 숨겨왔던 그래서무시되었던 여성인권 침해를 부각시킬 수 있었는데, 1993년 비엔나 법적은 인권 개념에 성인지성을 가미시키는 획기적인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최근 아동성폭력방지 긴급대책의 내용과 향후 개선방안」 토론

이현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1. 지역공동체가 힘이다.

성폭력은 아동이 노출되어 있는 많은 위험 중의 하나이고, 여성가족부의 2007년, 2010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는, 아동·청소년인 미성년자가 여러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월등하게 입는다는 것을 보고 하고 있다.

아동이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는 발제자의 아동성폭력 관련 사건을 정리한 대중매체 보도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많은 아이들의 희생된 결과로 성폭력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아동성폭력대응 체계가 형성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간과하고 있다. 성장과정중에 있는 아동의 안녕을 위해 '13세미만의 아동은 24시간 혼자 두지 않는다'는 가치와 태도가 실천되어야 한다. 이런 실천을 외면한 채 제공되는 외부장치는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 최근에 발생한 특정사건처럼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아동의 안전이 위협을 당한 특정 사건 발생 후 부처별 대책이 집중적으로 발표된 것을 볼수 있는데,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책으로 논하는 것이 눈에 띈다. 지역사회집단은 즉 건강한 공동체생활을 추구하는데, 공동체가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 가는 다음에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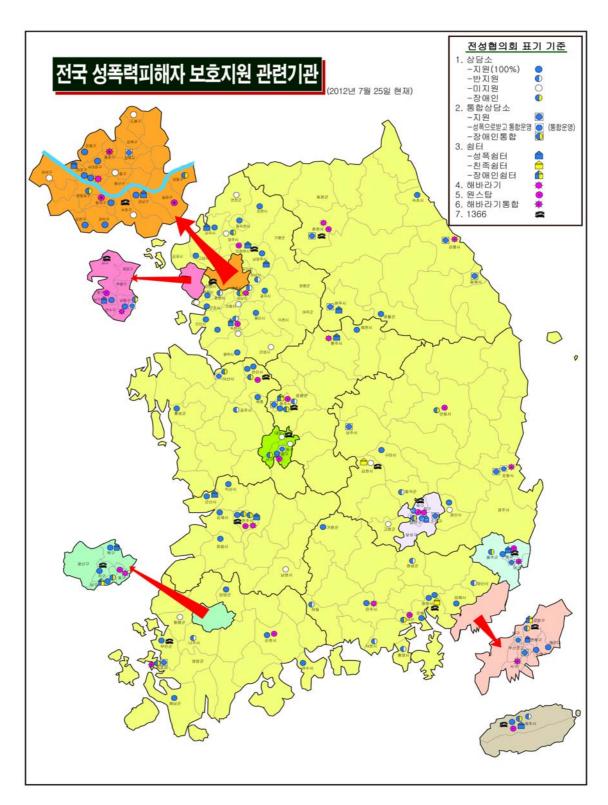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감과 자존감을 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건강한 공동체다. 건강한 공동체는 소속된 지역사회안에서 이루어진다. 사람은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가까운 친척 $40\sim150$ 명 가량이 함께 씨족 사회를 이루며 살았다. 16세기만 해도 유럽에서 매일 긴밀하게 접촉하며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은 평균 이십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1850년대에는 십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1960년대에 이르자 가족의 수는 겨우 다섯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20세기인 지금 한 가정의 구성원 수는 네 명이 채 못 되며 더울 놀라운 것은 미국인 중 26%가 혼자산다는 사실이다."

(브루스 D. 페리·마이아 샬라비츠의 '개로 길러진 아이' 386 p 인용)

현재 지역사회 안전망을 위한 정책인 '지역연대'가 추구할 목표는 위와 같이 좁아지고 얇 아진 가족의 기능을 대체할 지역사회기능이다.

2. 피해자지원기능 확충에 대하여..

정부가 제시하는 아동성폭력근절대책은 다양하다. 여러 대책중 성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성폭력대응전달체계를 해바라기아동센터중심으로 신규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관주도형인 해바라기아동센터만을 신규한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전달체계 확충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그림 1은 현재 전국적인 성폭력피해자보호지원관련기관 현황을 기호로 나타내 본 것이다. 그림 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서비스기관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치되지는 않았다.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조기개입과 치료를 위한 전달체계 확충시 지역적 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1]1)

¹⁾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유관기관네트워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만드는 중에 있고 완성된 것이 아님을 밝힘.



성폭력방지대책에 대한 검토(토론문)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2006년부터 거의 매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그렇게 사건이하나 발생할 때마다 각종 법과 제도가 추가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성폭력 관련 법제는 거의모든 제도를 망라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제도가 마련되었고 관련 법도 너무나 많다. 형법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전문가조차도 제대로 알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각종 법이 생겨나고 제도가 만들어져도 매해 제도망을 빠져나가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른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가? 물론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는 필요하지만, 본 토론문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 제도들 의 운영에 있어서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다.

정부의 아동성폭력 근절대책 중,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대책과 관련하여 '신상정보 공개 내용의 구체화'라는 애용이 있다. 그것은 주소지의 경우 동 단위까지만 공개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신상정보 상의 주소지와 실제 '공개대상자의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38조에서 일정한 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의 2에서 일정한 자(고지대상자)에게 등록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정보 고지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면 동의 지역주민이나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의 장, 학교장' 등에게 하는데, 실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거주지라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과 전혀 다른 곳의 주민들에게만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문제가 있다. 물론 같은 법제52조에서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개대상자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고 있다. 거주민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잠재적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실 거주지와는 다른 곳에 전혀 살지도 않는 사람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인 주소까지 공개되는 것도중요하지만, 공개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담당 보호관찰관 등을 지정하여 이들의 실 거주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피해자 권리실현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중 성폭력 특별법 체계에서 형법으로의 일원화에 대해 발제문에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기본적인 죄에 대한 부분만 나열되어 있는데, 성폭력 부분만 구체적인 처벌규정과 세부적인 제도까지 형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형법 전체적인 체계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차라리 현재 난립되고 있는 각종 법률들을 성폭력 특별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거의 같은 내용의 규정들이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위치추적이나 화학적 거세 관련해서도 성폭력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 진술의 선택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성폭력 범죄는 증인신문 시에만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에서 '심리'자체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별도로 증인신문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혹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증인신문 이외의 재판도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최근 성폭력 재판은 피해자를 대부분 고려해주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개로 하기를 원한다고할 때, 재판부가 굳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비공개로 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진다. 한편, 현행 피해자 증인신문시에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전자법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중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방으로 가고피해자가 재판부 앞에서 직접 증언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직접 마주치지않게 배려해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재판이 확대된다면, 법관이나 배심원들이 피해자가진술하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한 논의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에서는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8조의 2에서 언급되는 접근금지는 가해자가 가정법원에 송치된 뒤(즉, 수사가 모두 종결된 뒤) 보호관찰 처분을 하면서 함께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수사기간 동안에는 접근금지를 내릴 수 없다. 다만, 성폭력이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가정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임시조치 등은 청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가족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성폭력이 있을 때 접근금지관련 조치인데, 이러한조치는 결국 법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해보인다. 그러나 만일 법개정이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접근금지에 대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때, 통상 신청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야 하므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노출시킬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증인신문시 피해자에게 성과 관련된 노골적 질문을 하는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성폭력 관련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형사사건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 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소송촉진 등에관한특례법상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것은 법을 사문화하는 것일 뿐이므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적극적으로 내리도록 해야한다.

끝으로,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해자의 주체적인 지위는 인정되어야 한다.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피해자조력인 제도가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실제 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신뢰관계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아동청소년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6 내용도 '출석권'이 있다고만 되어 있어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은 진술을 하거나 변론을 할 수는 없고, 수사기록을 보려고 하더라도 법 자체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열람, 등사를 신청하면수사기록 중 피해자 진술부분만 등사가 되는 등의 제한이 여전히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무슨 진술을 했는지,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 모두 파악한 상황에서 재판을 함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증거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제대로 된 재판 준비를 하기 어렵다. 제도상으로는 '피해자의 법률조력인'이라 기재되어 있

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너무나 제한적인 도움만 받을 수 있도록해 놓은 것이다. 결국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와 같이 수사기관에 출석하거나, 재판정에 증인으로 나갈 때 같이 출석하는 정도이다. 사실상 '신뢰관계 있는자'의 역할 그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진술조력인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애매모호하다. 게다가 진술분석관이라는 또다른 제도가 있어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은 진술분석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 진술분석관 등의 여러 제도가 실제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제도로 정착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잘 이해해주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 사실 법률조력인, 진술조력인, 진술분석관은 수사기관이 해야 할 부분을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도움도 중요하지만 수사기관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수사관을 양성하여 그들에 의해 수사가 주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122-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TEL.02-3156-7230 Fax.02-3156-7271 www.kwdi.re.kr



